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심사보고

(의안번호 제164호)

- 2000. 10. 27.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0. 3.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0. 10. 9.
- 다. 상정일자 : 2000. 10. 27.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04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가. 제안이유

- 방배지역 청소년 독서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토지매입 : 방배동 1031-4 (574㎡)
2000년 관리계획에서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부지(991㎡)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근)

-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999 11.20 의안번호 제150호로 제출하여 제94회 정기회에서 원안가결된바 있으며, 용도·면적·취득기간등의 변경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금회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 강초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건립을 위하여 방배동지역 토지 991㎡를 추정가액 24억(2000년 5억)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입토록 의결된 것을 변경하여,
- 방배3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부지등으로 방배동 1031-4 토지 574㎡를 967,190천원(2000년 5억)에 2000~2001년까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위치확정, 금액 및 면적축소, 매입기간 단축)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다 특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기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동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본안건은 작년도에 일단 장소는 정하지 않고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건립 부지매입으로 991㎡가 적정하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지난 7월19일 상임위에서 상정되었으나 심사 보류되었고, 지난번 상임위에 제출한 내용과 전혀 다른게 없고, 주관과에서 계속 검토를 하여 최상의 적정부지로 판단이 되어 재상정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점에서 최상의 적정부지라 판단이 되었는지?

답) 당초 '99년도에 방배지역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사유지는 저희 감정이 하고 맞지를 않아 확보를 못하였고 사유지로는 대부분 30평, 50평정도여서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적정부지를 검토하다가 방배동 1031-4호 574㎡로 약간 부지로서 작기는 하나 방배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선 이땅이라도 매입을 하여 독서실을 건립코자함

질) 지난번 상임위에서 종전에 계획했던 청소년종합회관은 독서실 건립으로 대체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관과장과 담당국장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독서실을 건립하면 방배지역에는 청소년회관의 건립계획은 무산되는 것인지?

답) 당초에 방배지역에 먼저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려 하였는데 적당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 고민하다가 현재 방배동 1031-4번지가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주변에 학교도 많이 적정지로 확보하였으나 종합회관을 건립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협소한데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는데 소규모 순수한 독서실 기능뿐 아니라 조금은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할것으로 보이며 계획에 따라 부지가 확보되면 청소년종합회관 건립은 계속 추진할 계획임

질) 독서실은 사설독서실도 많은데 여기저기에 청소년시설을 늘어놓지 말고 예산이 추가 되더라도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이번 토지매입을 유보할 수 없는지?

답) 이런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이 대규모로 지어서 권역별로 할것이나, 접근성을 고려해서 소규모로 여러곳을 지을것이나 상당히 논란이 있으나 항상 결론은 없어 이번 독서실 기능은 대규모 권역별 보다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접근성 위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어 건립하고자 하니 의원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질) 청소년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구예산을 증액시키는 결과로 주민들의 세수를 늘리게 되는데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이런 부지를 확보하여 꼭 독서실 같은것만 짓지말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농구장 같은 운동시설로도 투자를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세수 걱정이 다소나마 줄어들다 생각하는데 방향을 바꾸어 운동시설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 구청 농구장 예를 들면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에서 이런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면 호응이 상당히 좋아 부모들도 마음놓고 보낼수 있어 훌륭한 생각이라 생각하며, 물론 독서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독서실 기능외에 시설 범위안에서 약간의 기능을 넣어, 농구장은 못들어 가겠지만 실내탁구장등 청소년 체력을 위한 시설도 넣도록 하겠음.

질) '96년도에 방배동 산44번지에 구유지 9,000평을 활용하기 위해 구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84억원이 계속비로 편성되었으나 집행하지 못했고 구립도서관을 짓는데 실제로 설계는 구립독서실로 완료되어 공사입찰까지 한 상태에서 출입로에 있는 몇몇 주민들이 반대 한다고 집행보류를 했다가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고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독서실을 당시에 좋은 부지가 나오면 짓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게 옛날 그분분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 '96년도에는 구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한것이고 저희가 지금 짓는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는 자그마한 시설이며 도서관은 국립도서관처럼 자료실, 정기간행물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문화공보과에서 건립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있고 이번에 건립하려는 독서실은 도서관하고는 별개의 시설임.

질) 청소년종합회관 등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할때에는 권역별로 하지말고 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그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 그실정에 맞는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할것임.

답) 방배, 서초, 반포, 양재등 권역별로 계획을 검토하다 보니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특성이 차이가 나는건 사실인바 예산이 따라가 주면 각동별로 주민들의 욕구를 분석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다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방배동 쪽에는 방배본동등 동사무소를 신축한지가 얼마 안돼 거기에 독서실이 준비되어 있지만 평소에는 이용하는 학생이 적은걸로 알고있는데 이용률을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이용하는 학생에 비해 어느정도 공간이 예상된 상태에서 건립을 해야지 막연하게 청소년회관을 지으려다 땅이 부족하여 독서실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1,500㎡이상을 청소년종합회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민체육센터 또는 독서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원촌인터넷독서실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아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구민회관에 있는 독서실에도 새벽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실태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연구를 해서 청소년독서실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겠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찬성 4, 반대 1, 기권 1)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체계지구정리내용 : 없 음.